

제 1426 호  
1988.12.5

발행인: 서울특별시경 김 용 래  
편집인: 공 보 관 윤 두 영  
전 화: 731-8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공문시행	
'88.제 9 회 확장심사결과발표통보.....	3
◎ 규 칙	
제 2265 호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록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규칙.....	6
◎ 고 시	
제 58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1
제 904 호 : 도시계획사업 (하천개수) 실시계획인가정경.....	31
제 90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32
제 911 호 : 사방지정지해제.....	33

(이면계속)

안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2403

제 917 호 : 사방지정지해제 .....	38
제 918 호 : 가스사업등의의력가기준및 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 .....	54
제 930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	54

㉔ 공 고

제 822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완료 .....	55
제 825 호 : 특정설비제조업소허가취소처분 .....	55
제 834 호 : 가락제 2 구역주택개발사업공사완료 .....	56
제 836 호 : 천호제 2 구역주택개발사업공사완료 .....	56
제 837 호 : 주민등의견청취를위한도시계획 ( 안 ) 공고 .....	57
제 839 호 : 서울역~시대문제 1 구역제 7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	57
제 840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 .....	58
제 855 호 : 역촌구역 ( 2 차 ) 주택재개발사업공사완료 .....	60
제 858 호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공람 .....	60
제 866 호 : 전기공사업체행 전처분 .....	61
제 868 호 : 서소문제 4 지구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61
제 869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 기간연기 ) 인가 .....	62
제 872 호 : 재개발사업에관한공사완료 .....	62

㉕ 구 고 시

제 4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63
제 110 호 : 동관인개각사용승인 .....	64

㉖ 구 공 고

제 118 호 :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완료 .....	65
제 149 호 : 주택 자재생산업 자등등록취소 .....	65
제 322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 .....	66

㉗ 사업소 고시

제 34 호 : 화전점용허가 .....	66
-----------------------	----

㉘ 사 령

**공 문 시 행**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새제로”  
( 판 인 생 · 략 )

서 울 특 별 시

시 정 01226-268 ( 731-6151 ) 1988. 11.

수 신 수신처 참조 ( 3년 )

계 목 : 착상심사결과 발표홍보

1. '88년 제9회 시경발전 착상심사결과 및 시상내역을 현청과 시·군·구 시·도청에 시달하거  
지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 적극권장하여 시경발전 착상제도 운영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참 부 '88년 제 9 회 채택착상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 시경개발담당관 전결 )

수신처 서과 1-71, 서사 1-57, 서구 1-22, 시보 1-22.

작성등급	착 상 내 용	비 고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번호 :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부식된 화강암 경제석 세척</li> </ul> </li> <li>○ 세종로 중앙분리대 경제석이 노후 부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교체시공이나 복수제인트를 도색시 많은 예산과 기일이 소요되므로</li> <li>○ 특수약품으로 세척처리하여 “돌”의 원색을 찾도록 하여 시공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 (기대효과)</li> <li>○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 개고 착상자 : 녹지사업소 지방입업기원 김진열</li> </ul>	시장표창및 시상금 10만원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번호 : 1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신청과 급수신청의 일원화 방안</li> </ul> </li> <li>○ 급수가능 지역에서는 단독주택건축허가 신청시 급수공사신청을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건축허가후 즉시 착공가능토록 수전을 개편하여 사용토록 건축허가신청과 급수공사신청의 일원화 (기대효과)</li> <li>○ 건축허가후 급수공사 신청을 하므로 불편요하게 1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제거 착상자 : 노원구 건축과 건축기과 주수일, 기계기사브 최만현</li> <li>○ 접수번호 :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구매물품납품검사원 제도개선</li> </ul> </li> <li>○ 조달물품 구매시 조달청에서 물품납품 계약 체결후 납품업자가 납품검사를 요청할때 물품납품 및 영수증과, 납품검사원의 2 가지 서류를 제출토록되어 있어 불편하므로</li> <li>○ 물품납품 및 영수증의 시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납품검사원을 생략토록 제도개선 (기대효과)</li> <li>○ 불필요한 첨부서류 개선으로 민원불편해소 및 행정능률향상 착상자 : 재무국회세과 지방행정서기 권영희</li> </ul>	

착상등급	착 상 내 용	비 고
노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번호 : 977</li> <li>- 조명등 관리개선</li> <li>○ 안양하수처리장의 최초 침전지 관란의 조명등이 백열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수명이 짧고 등고가 높아 보수작업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므로</li> <li>○ 백열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등고의 높이를 조정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li> <li>(기대효과)</li> <li>○ 조도향상으로 안전사고 방지</li> <li>○ 전력요금 절약</li> <li>착상자 : 안양하수처리장 지방전기기사보 김현근 안양하수처리장 지방전기지원보 신우요철</li> <li>○ 접수번호 : 980</li> <li>- 부동산 등기압류 종합대장 비치관리</li> <li>○ 각종 시세, 공과금 제남시 그 보편적으로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있는바 등기부상에 압류사유 및 압류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압류부서 확인시 불편하므로</li> <li>○ 종합압류대장을 비치관리하던지 관제기관(대법원, 내무부)에 압류 처분청의 해당부서명을 세부적으로 기재토록하여 압류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개선</li> <li>(기대효과)</li> <li>○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li> <li>착상자 : 동대문구 재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조선호</li> </ul>	<p>시장표상 및 시상금 10만원</p>
동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번호 : 835</li> <li>- 동사무소 전기사용업종변경</li> <li>○ 현재 서울시 475 개동중 180 개동이 전기사용업종을 주택용으로 계약 사용하고 있어 과중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바</li> <li>○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있는 동사무소중 297 동(은</li> </ul>	<p>시장표상 및 시상금 100만원</p>

작성종급	작 상 내 용	비 고
장려상	<p>익분기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163 개동의 전기업종을 업무1종(공공용)으로 변경사용토록하여 연간 23,530천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개선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요금 예산절감 (년 23,530천원) 작성자: 은평구 수색동 지방행정주사 백제승           은평구 수색동 지방행정서기 조정구</li> <li>○ 접수번호: 835 - 냉각기의 효율적 관리 예산절감</li> <li>○ 각동사무소에 냉방기용 동력선이 설치되어 비사용기간(8개월) 동안에도 계약전력요금(11kw기준) 48,940원을 낭부하고 있는 바</li> <li>○ 비사용기간에는 동력선을 폐지하고 사용기간(6-9월) 동안에 재설치 신청하여 사용토록하여 예산절감(기대효과)</li> <li>○ 비사용기간의 전력요금절감 작성자: 강서구공향동 지방행정서기 김용민</li> </ul>	<p>시장표창및 시상금 3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b>규 칙</b></p> <p>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태</p> <p>◎ 서울특별시규칙 제 2265 호</p> <p>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중 “산림법 제 18 조의”를 “산림법 제 56 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 10 호 서식 또는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광고물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 1 항 제 3 호의 구비서류와 허가증외에 별지 9 호 서식에 의한 광고물의 안전점검확인서</p>	

를 첨부하여 설치기간 만료 7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 5조 제 3호중 "산림법 제 18 조의" 를 "산림법 제 56 조의" 로 하고, 동조제 4호중 "공원법 제 9 조의" 를 "자연공원법 제 4 조 내지 제 6 조의" 로 하며, 동조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16호중 "제 1호 내지 제 15호 이외에 미관정비를" 을 "기타 미관정비 또는 도시환경정비" 로 한다.

8. 교량, 축대, 육교, 고가도로, 다만 육교에 공익성이 있는 합리적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6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7호중 "제 13 조의" 를 "제 2 조 및 제 13 조의" 로 한다.

3. 야경광고물 및 옥상광고물. 다만, 공공의 목적수행상 필요하고 별표 1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야경 광고물과 별표 12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의 옥상광고물은 예외로 한다.

제 7조 제 1항중 "미관정비를" 을 "미관정비 또는 도시환경정비를" 로 하고, "일정지역을" 을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등 미관상 필요한 최소지역" 을" 로 한다.

제 8조 제 3호 및 제 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시설관

리공단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에 부 대하여 운영하는 광고업무

8. 경기장 또는 운동장 내부에 설치하는 광고물. 다만, 광고물의 내용이 경기장 또는 운동장의 함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1조 제 1항중 "(벽보지류, 차량이용광고, 전단, 조각형등은 제외)" 를 삭제하고, 본문에 구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 8조 자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과 벽보지류, 차량이용광고, 전단 및 조각형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제 1항중 "별표 1 내지 별표 12" 를 "별표 1 내지 별표 21" 로 하고, 동조제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로간판, 세로간판, 붙출간판, 지주이용간판과 정광류 및 네온류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에 규정된 설치방법외에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규격, 설치위치등은 동일건물 및 주변건물의 간판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개 업소에 1개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p>2. 1개 업소에 1개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p> <p>3. 합판, 스티로폼, 스테트, 5%미만의 아크릴 및 비닐류등 저질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자재 (비철금속,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p> <p>4.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KS 규격 전기제품이나 점정품을 사용하여 하부 부속품의 외부노출을 금한다.</p> <p>5. 자기영업소 및 자기건물에 관연이 없는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p> <p>6. 무허가건물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p> <p>6. 담장위에 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p>	<p>제 7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설이 불가피한 때</p> <p>㉓구청장은 설치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개수·이설·도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㉔별 제 5 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기간은 10 일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물의 종류와 내용</li> <li>2. 광고물의 크기와 수량</li> <li>3. 광고물의 설치장소</li> <li>4. 광고물의 설치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성명·주소</li> <li>5. 대집행일시</li> <li>6. 대집행비용</li> <li>7. 대집행비용 징수방법</li> </ol> <p>㉕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설치자에게 대집행한다는 뜻을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하여 체고하여야 한다.</p>
<p>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제 5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 발견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을 때</p> <p>제 15 조 제 2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 3 항 내지</p>	



<p>⑥ 제 5 항의 제고기일내에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하여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하여야 한다.</p> <p>⑦ 대집행을 한 경우에는 대집행 비용을 별지 제 14 호 서식의 비용납부명령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제 15 조의 2 제 3 항 제 2 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 3 호 내지 제 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p> <p>4. 제 1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광고물 &gt;</p> <p>5. 높이 4 미터이상의 돌출광고물, 면적 10 제곱미터이상의 내문광고물 및 경축용 소형깃발등의 설치</p> <p>6. 별표 5, 별표 6, 별표 8 내지 별표 12 및 별표 19 에 규정한 광고물</p> <p>제 15 조의 2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⑤ 제 3 항중 제 1 호, 제 3 호, 제 7 호 중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제 13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3 호는</p>	<p>반드시 시골특별자치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p> <p>&lt;별표 1&gt; 내지 &lt;별표 13&gt;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lt;별표 14&gt; 내지 &lt;별표 21&gt; 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lt;별지 9 호서식&gt; 내지 &lt;별지 13 호서식&gt; 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기존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광고물은 설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 (미허가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구역, 승강장,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의 공장 옥상등의 광고물등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 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

〈 별표 1 〉				
가 린 간 판				
규 격	색 채	형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1. 문자의 크기 70 cm× 70 cm 이내 2. 판류의 크기 •가로 : 건물폭이내 •세로 : 70 cm이내 및 층간 벽면높이 이하 (동일 건물통일)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또는 문자 색채는 흑·적색 1/2 초과 금지	조각형	1. 벽체에 직접 조각형 문자로 부착 하되, 5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1층에는 판류이용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2. 도로꼭자지점에 면한 업소는 측면 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벽체에서 20 cm이상 돌출할 수 없으며, 삼각형등 변형간판을 설치 하지 못한다. 4. 비온류물 사용할 수 있되, 그 기준은 별표 15 에 의한다. 5. 5층이상 건물에는 건물상단의 정면 또는 측면의 1개소에 건물 명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벽면폭의 1/3 이내 크기로 조각 형문자를 벽체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6. 단층건물의 뒷면을 가리는 가 림판은 지붕높이 이하로 하되,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가림판을 이용하여 별도간판을 부착하는 때에는 주변간판의 높이 와 같아야 한다. 8. 3층이하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3.5 ㎝미만의 간판은 신고없이 설 치할 수 있으며, 4층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3.5 ㎝ 미만이라도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 2년이내

〈별표 2〉					
새 로 간 관					
규 격	색 채	글자면적	설 치 방 법		추가 신고 필수기간
세로 200cm 이내 X 가로 60cm 이내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또는 문자 색채는 흑·적색 1/2 초과 금지	표지면적의 3분의 2 이내	1. 2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1층 입구 양측에 각각 1개씩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2. 연합광고사 개별 간판 규격은 가로 60cm X 세로 5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획가(인 고) 필요 없음.
〈별표 3〉					
물 출 관 고 물					
규 격		색 채	글자면적	설 치 방 법	추가 신고 필수기간
벽면으로 부터 1 m이내 (부착 장치 포함)	1. 당해건물 지붕높이 이하 및 20m이하 (상업지역 은 30m 이하) 2. 개별간판 의 길이는 5m이하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바탕 색 및 문자 색채는 흑·적 색 1/2 초과 금지	1. 간판면적 의 2/3 이내 2. 개별문자 크기: 주변 경관 고려 신축성있게 표시 3. 상징형 도안별도	1. 벽면이용 물출은 3층 이상 의 건물에 한하여 지상 3m (인도가없는 경우 4m) 이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약국등 공익성이 큰 광고물에 대하여는 2층 이하라도 설치할 수 있다. (봉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2. 목조건물, 가건물 및 건물 전면목이 10m미만의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전 면목이 10m미만인 경우에도 인접건물내 전면목을 합한 면 이 10m 이상인 때에는 연립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획가, 2년이하

구 격		색 체	급자면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돌 출	길 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벽면과 광고물은 밀착시켜야 하며, 간격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cm 이내로 한다.</li> <li>4. 한옥이나 가건물의 뒷면을 가리운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시설상단을 지붕으로 간주한다.</li> <li>5. 철주를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자기 소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높이는 4m 이상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6. 함반이물 램프로 사용할 수 없다.</li> <li>7. 비온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16에 의한다.</li> <li>8. 연립건물 설치시 3층이상 업소에 우선 설치하며, 업소물 상징하는 상징형 간판설치를 권장한다.</li> <li>9. 건물의 구조상 불가피하거나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준 및 규격을 초과할 때에는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li> <li>10. 설치자는 허가일로 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11. 연립건물의 상하광고물간 거리는 조화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돌출의 폭·두께는 동일하여야 한다.</li> </ol>	

<p>&lt; 별표 4 &gt; <u>공 연 광 고 물</u></p>				
규 격	수 량	색 색	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p>새로: 건물 높이의 1/4 이내 가르: 건물 전면폭의 1/3이내 * 건물이다 함은 공연장 전용건물 또는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주건물을 말함.</p>	<p>상영프로: 1 차회프로: 1</p>	<p>형광도로 사용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벽면으로 부터 30cm 이상 돌출할 수 없으며, 낙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2. 광고물 하단을 3m 이상으로 한다.</li> <li>3. 실물의 모형등을 도안할 때에도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li> <li>4. 동일 내용은 1개월 표시할 수 있다.</li> <li>5. 공연내용의 선전을 위한 별도 광고탑 또는 입간판설 설치할 수 없다.</li> </ol>	<p>허가, 공연 종료시 꺼지</p>
<p>&lt; 별표 5 &gt; <u>공공시설종말이용하는광고물</u></p>				
규 격	색 색	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p>공공시설물 표시면적의 1/3-1/5 이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광도로 사용금지</li> <li>2. 마라색 또는 갈자 색채는 후·적색 1/2크파 금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2. 문자가 표시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문자와 혼동되는 광고문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표내의 자체문자는 예외로 한다.</li> </ol>	<p>허가, 2년이내</p>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를 여부 및 설치기간	
		3. 설치대상시설은 버스,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시장승인) 4. 설치장소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대중교통의 요충지, 보도, 도설 간선도로 등에 밀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b>(별표 6)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광고물</b>					
종별	규격	지상높이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를 여부 및 설치기간
물체 광고	세로 100cm 이내 가로 30cm 이내	지상으로 부터 3m 이상	1. 횡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은 흑, 적색 1/2초과 금지	1. 1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1개의 물체 광고만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안전표지)가 첨부된 전주 및 가로등주에는 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허가, 2년 이내
<b>(별표 7) 서 비 스 광 고 물</b>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를 여부 및 설치기간	
강제광고물 표시면적의 1/3 이하	광고관인경우 바탕색은 흑, 적색 1/2 초과 금지	1. 광고의 동일내용은 1개만 표시한다. 2. 광고내용의 상품류를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필요 없음. 다만, 간판 면적 3.5㎡ 이상은 신고	

(별표 8)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위치	규격	색채	소재	설치방법	허가기간 및 설치기간
1. 버스 (전차) 내부와 석상부 공간	가로 30cm X 세로 60cm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바탕 색은 흑 · 적색 1/2초 과금지	실크지 마나라 보루지	1. 좌석상부공간 이용광고물은 광고설치 데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차내에 동일내용의 광고물은 1 개단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에 따라 배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승객의 혐오감이나 불편감을 주는 내 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4. 차량의 상태가 불량한 차내에는 광 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5. 스티커, 알미늄등을 이용 미려한 액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내부벽과 밀착하여야 한다.	허가, 2년 이내
2. 차량 양측면 (자기 차량)	1. 문자· 회화표시 면적: 1/5 이내 2. 상표: 1/10 이내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바탕색 흑·적색 1/2초과 금지	알미늄판 스텐액스	1. 차량전면 및 후면어의 광고표시는 금 한다. 2. 자가용에 한하며, 자기회사명, 상징형 도안 및 전화번호표시에 한한다. (평면문자) 3. 광고판인 경우에는 밀착시켜야 한다.	신고, 2년 이내
3. 도선 버스측 면 및 후면	1. 측면: 60cm X 90cm 이내 2. 후면: 25cm X 50cm 이내	1. 형광 도로사 용금지 2. 바탕색 은 흑· 적색 1/2 초과금지	철 판	1. 광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개차량에 측면 각 1개, 후면 1개 이내	허가, 2년 이내

지 하 도 광 고 물					
( 별 표 9 )					
표시위치	규격	색채	재료	설치방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1. 지하 도벽면	가로 3m × 세로 2 m 이내	흑·적색 1/2초과 금지 (사 친의 경 우 제외)	1. 스프 리트 2. 전자 식 조명 광고	1. 벽면에 밀착하되 20cm 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동일 지하도내에 동일내용의 광고물은 1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방향표지판과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동일벽면에 나란히 설치되어 방향표지판의 기능을 저해시킬 위태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주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위치가 동일되어야 하며, 광고물간 상호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5. 주민불편의 안전을 위하여 천정부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허가, 2년 이내
지 하 철 역 광 고 물					
( 별 표 10 )					
표시위치	규격	색채	재료	설치방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승·리차장 건너편	세로 90cm 이내 × 가로 180 cm 이내	1. 형광 도로사 용 금지 2. 흑·적색 1/2초과 금지 (사 친의 경 우 제외)	1. 배온 (점멸식 금지) 2. 스프 리트	1. 벽면에 밀착하되 벽면으로부터 10cm 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광고물간 상호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되, 설치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3. 동일역내에 동일내용의 광고물은 1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허가, 2년 이내



(별표 11) 야 립 광 고 물			
구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청 및 설치기간
시장 또는 구청장이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형광도료 사용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군사 또는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기관의 설치요청이 있을 때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등을 고려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시설의 차폐를 위한 야립광고물에 있어서는 인공 및 자연차폐가 불가능하여 광고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li> <li>2. 광고물 표시면적의 제한 및 색상등은 주변경관등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li> </ol>	허가, 2년 이내
(별표 12) 옥상광고물 (광고탑 포함)			
구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청 및 설치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1면 공간(가로×세로)의 각각2/10 이하×높이(건물옥상 바닥에서) 5m이하</li> <li>2. 다만, 최대 규격은 가로10m×세로7m×높이(건물옥상바닥에서 5m이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광도료 사용금지</li> <li>2. 바탕색 및 문자색채는 흑·적색</li> </ol> 1/2초과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탑은 옥상바닥면에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다.</li> <li>2.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의 공장, 옥상, 기업체 본사건물옥상에 기업체명, 공장안내, 착사 제품에 한해서 업체당 1개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li> </ol> 다만, 주거지역과 밀접하거나 고속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교통안전이나 미관상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 2년 이내

구	구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설치기간
				3. 동일건물의 옥상에는 옥상광고물 1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건물 옥상의 광고물과의 상호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이나 소유주 또는 경영주가 각각 다른공장이 연립하여 있어 50m의 거리유지가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도로에 면한 옥상전면 외측파 나란히 설치하여야 하며 제책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광고판이변과 하단의 지주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도색, 도피방지, 수시보수), 철거등을 위하여 철거소요설비를 제작·도복 하여야 한다. 6. 계시시설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부속품은 검정품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배은사용 불가) 7. 목조건물과 가건물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8.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 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3)

윤 립 꾀 광 고

종	설치장소	규	격	새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설치기간
1. 시너비스 외부 광고	노선버스 좌우측면	좌우측면 200cm (가로) × 50cm (세로) 이내	1. 알루미늄 2. 크라스 락 3. 스펀에 스	1. 형평도로 사용 금지 2. 바탕색, 문자 및 형상도안 색상은 흑·적색 L2호과 금지	1. 형평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2. 1개 차량에 좌측면 1개, 우측면 1개, 우측면 광고판은 노선번호 및 행선안내 식별에 지장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허가. 1년 이내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설치기간
				색상은 흑·적색 1/2초 과광지	3. 광고판은 밀착되도록 하 여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 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용 택시광 고	택시표지 등	1. 일체적 삼각형 2. 가로 84cm 91cm이 내(58- 91.4cm) 3. 높이 (세로) 24cm이 내 4. 밀변 20cm 이내	1. 아크릴 2. 프 라 스 틱	1. 형광도 표사용 금지 (바탕 색은 밝 은색으 로 한 다)	1. 양쪽 4 각면에 광고표시 2. 전후 3각면에 회사명등 표시 * 내부에 전구등 부착하여 방범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허가, 1년 이내
3. 환경정 화용대 형광고		20cm(가 로)×10m (세로) 이내	영광철판	1. 바탕색 형광도 표사용 금지 2. 바탕색 은 흑· 적색 1/2 초과금 지	1. 설치장소, 선정기준: 철도, 국도, 고속도로변중 환경이 불량하여 시장 또 는 구청장이 특별히 차폐 미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장소로서 ○ 자동차등의 차량시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곳 ○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지 아 니하는 곳 ○ 도로, 계방등 시설물의 기 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곳	허가, 1년 이내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회중이거나 추진중인 공사에 지장이 없는곳</li> <li>○ 자연경관등 주변경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곳</li> </ul> 2. 차폐미화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탑광고	올림픽대회와 관련있는 주요관광지 및 경기장내	지상 15m 이내	1. 철 관 2. 시멘트 3. 알루미늄 4. 스텐레스등	1. 바탕색 형광도 표시용 금지	1. 전문가가 설계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2.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허가, 1년 이내
5. 전광판 광고(배 은광고)	1. 내도시의 상가터미널의 옥상 또는 벽면 2.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허가청이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되, 기	20m(가로)× 15m(세로)이내	전광판류의 특성 에 따르 되, 우수 규격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1. 전문가가 설계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2. 특히 주간에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심야소등 강치를 하여야 한다. 3. 주거전용 및 주거지(APT) 인접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 1년 이내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p>존의 다 른시설 물에 부 가설치 할 경우 에는 그 시설물 의 안전 도등 기 술적 점 사를 실 시하여 결정한 다.</p>					
6.지하철 역 및 전차역 광고	<p>1.각역의 구내에 2개이내 2.설치위 치는 관 제기관 과 협의 적정 ·지하 철역 ·서울 지하철 공사등 ·수도 권전 차역 ·철도 청</p>	<p>250.0mm (가로)× 150.0mm (세로) 이내</p>			<p>1. 역구내의 모든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여객안내용 표지판 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 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허가, 1년이내</p>

< 별표 14 >				
지 주 이 용 간 판				
종 류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지주이용 간판	1. 화단폭의 1/3 이내 2. 높이 8 m 이하 3. 높이 4 m 이상은 건 축법상 건 축부시와 사전 협의	1. 형광도로 사용 금지 2. 비탕색 또는 글자 색채는 흑· 적색 1/2 초과 금지	1. 자기소유 화단 또는 사유지, 공한 지중에 화단조성후 설치할 수 있다. 2. 기재사항은 기업채명, 공장 안내표 시에 한한다. 3. 도로경계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4.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 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허가, 2년 이내
< 별표 15 >				
형광류 및 네온류 광고물				
종 류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가로간판 돌출간판 및 건물 벽면간판	1. 가로간판 및 돌출간 판규격이내 2. 건물벽면 간판의 규 격은 새로 5 m 미만× 가로건물길 이 조화	적색류 원광 표출은 네온 간판면적 1/2 초과 금지	1. 주거전용지역, 교육 및 인주지구에 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중 노폭 15 m 이상 도 로에 접하는 경우와 특수지역(의료 기관,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구역)은 예외로 한다. 2. 건물벽면간판의 경우 4층이상 건 물벽면의 전면 및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벽체에서 40cm 이상 돌출 불가)	허가, 2년 이내

종 류	규 격	색 책	설 치 방 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3. 환옥·복조건붙이는 설치할 수 없다. 4. 신호등 부근 50m전후 좌우에는 점 결식 및 신호등과 같은 색은(적· 황·녹색)을 사용할 수 없다. 5. 점멸등(소형조명전구), 상업용 전 자식 전광판은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특수지역(의료기관, 약국, 관광호 텔, 역·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약 내구역)에 한하여 상업용 전자식 신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 6. 항소년선도 유해요소(디스크로, 심 야주방등)의 자극적이고, 원성적(적 색광) 색상 표출을 금지한다. 7.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고속도 로등이 전방되거나, 교통안전상 또는 도시미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 우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8.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익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지역 및 설치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9. 설치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한 연 허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10.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6> 이 · 미 용 소 사 인 불				
규 격	색 책	설 치 방 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지름 25cm X길이 70cm 이내	1. 2색이내 2. 실장적 도가 만 표시가능	1. 1개업소에 1개소에 한한다. 2. 건물 1층 출입문 측면 점두에 설치함을 원칙 으로 한다.	허가, 2년이내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3. 천주를 이용할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고 자기소유지에 화단 조성후 높이 2 m 이하로 설치한다. 4. 돌출은 부차부분에서 50 cm 이내이어야 한다. 5. 동행에 지장이 없게 안전하게 설치한다.	

(별표 17)

주요 소출 색인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가로 230 cm 이내 X 세로 150 cm 이내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은 흑·적색사 용 금지하 고, 문자는 1/3 이내	1. 1개업소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2. 자기업소, 소유지내에서 천주(쌍주 및 단주)를 이용할 경우 높이 10 m 이내로 설치하여, 도로경계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 점검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징도안 및 영문병기를 권장한다.	허가, 2년 이내

(별표 18)

철도역 입간판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가로 5 m X 세로 4 m X 지상높이 5 m 이내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채 는 흑·적 색 1/2 초 과금지	1.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 및 동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경철선과 사선 형조 다만, 자기소유지일 경우 제외) 3. 철도역 구역(철도연변)에 설치하는 역사에서 50 m(상, 하행)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철도역 구역(연변)의 입간판은 광고물 상호 거리를 10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허가, 2년 이내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선고 및 설치기간
		5. 철도연변 광고물은 철도부거내에 설치하되, 철도 해일로부터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철도외곽(바깥쪽)으로는 광고표시를 할 수 없고, 철주둥이 보이지 않도록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철도, 전철역 승강장의 각종 입간판과 벽면부착(가로간판, 세로간판)용 상업용간판은 승객들의 방향표시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역사마다 10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1개간판 면적은 1㎡이내) 7. 철도역 승강장의 입간판은 지상높이 1m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19)

고속도로변휴게소내광고물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선고 및 설치기간
1. 시계탑 광고 2. 관광안내도 가로 7m이내×세로 8m이내×높이 10m이하 3. 게시판 가로 2m이내×세로 1m이내×높이	1. 향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과 색채는 흑·적·색 1/2 초과금지	1. 시계탑광고, 관광안내도, 휴게소 안내탑광고는 휴게소마다 1개소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고속도로, 국도연변 50m이내의 입간판, 아랍형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통질서제도, 행정시책구호, 상업광고등을 위한 광고물 설치는 금지한다. 3. 시계탑광고, 관광안내도, 게시판, 안내탑에는 상업광고 표시가 전체 광고표시 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스텐레스, KS규격 자재등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자재로 안전과 미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높이 4m이상의 시계탑, 관광안내도, 안내탑광고는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2년이내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4m이하 4. 휴게 소안내 탑광고		5. 설치자는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 확인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0) <b>비행선광고</b>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선체규격 이내	1. 청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채 는 흑, 갈 색 1/4 초과금지	운항시 보안상 허가가 필요한 지역은 신청 인이 미리 관련부처 또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서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허가, 30일 이내
(별표 21) <b>기타광고물</b>				
종류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청 여부 및 설치기간
1. 입간 판(선 전탑, 아취 포함)	1. 지상 8m이 하 2. 폭 1 m이하	1. 청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 채는 흑, 적색 1/2 초과금지	1.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경찰관서와 사전 협의) 2. 동행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소 유지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3. 풍익설 및 공공성이 없는 순수상업광 고를 금지한다. 4. 아취 및 선전탑의 경우 따로 지칭하 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아취 및 선전탑의 경우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20일 이내

종 류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신 고 및 설치기간
			6. 20일이내 한시적인 설치광고물에 한한다.	
2. 현수막	폭 : 1 m 이내 길이 : 현 장 조화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채는 흑, 적색 1/2 초과금지	1. 공중의 통행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상높이 4 m 이상으로 하고, 저층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공공성 및 공익성없는 순수 상업 광고를 금지한다. 4. 문자, 회화등 표지는 나뭇잎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신고, 1월이내
3. 프랑카드	폭 : 1 m 이내 길이 : 현 장 조화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채는 흑, 적색 1/2 초과 금지	1. 공중의 통행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상높이 5 m 이상으로 한다. 3. 20 m 이상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할 수 없다. 4. 공공성 및 공익성이 없는 순수 상업 광고물 금지한다. 5. 문자, 회화등 표지는 나뭇잎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6. 양측 지지대로 가로수를 사용할 수 없다.	신고, 1월이내
4. 애드벌룬	폭 : 2 m 이내 길이 : 현 장 조화	1. 형광도로 사용금지 2. 바탕색 및 문자 색채는 흑, 적색 1/2 초과 금지	1.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허가, 1월이내
5. 벽보지류	지정 벽보 규격 이내 (190cm X 90cm)	바탕색은 흑, 적, 형광 도로 사용금지	1. 신고하여 점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간만료와 동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지정 벽보판의 장소에 첨부할 수 없다. 4. 1개 지정 벽보판에는 동일내용의 광고물을 1개 이상 첨부할 수 없다.	신고, 15일이내
6. 전단	세로 30 cm X 가로 40cm	바탕색 또는 문자 색채는 적색 1/2 초과금지	1. 가로에 삽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중살포 제외)	신고, 15일이내 (공중 살포는 허가 5일이내)

(별지제 9 호서식)		<b>광고물안전점검확인서</b>	
신청 자	장 소		
	업 체 명		
광고물허가 일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광고물허가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설치)의 위치 또는 장소			광고 규격
	점 주 소		
점 검 자	업 체 명	전화 번호	
	성 명	전화 번호	⑩
<p>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span style="float: right;">⑩</span></p> <p style="text-align: center;">구 청 장 귀 하</p> <p>(별지제 10 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광고물표지설치허가증</b></p> <p>제 호</p> <p>사업장 소재지</p> <p>신청자 상호</p> <p>성 명</p> <p style="text-align: right;">주민등록번호</p> <p>귀하가 신청한 광고물표시(설치)허가에 대하여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물의 종류 및 사용목적</li> <li>2. 설치시설 규격 및 사용목적</li> <li>3. 설치장소</li> <li>4. 허가기간</li> <li>5. 관리자 상호 호</li> <li style="padding-left: 20px;">소재지</li> <li style="padding-left: 20px;">성 명</li> <li style="padding-left: 20px;">주민등록번호</li> </ol> <p>5. 시공자 상호 호</p> <p style="padding-left: 20px;">소재지</p> <p style="padding-left: 20px;">성 명</p> <p style="padding-left: 20px;">주민등록번호</p> <p>7. 허가조건</p> <p style="text-align: right;">구 청 장 ⑩</p>			

(별지 제 11 호서식)

올림픽광고물설치 (표시) 허가증

○ 시(구) 제 호  
설 청 자

귀 위원회에서 신청한 올림픽광고물 설치(표시) 허가에 대하여 광고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함

1. 광고물의 종류
2. 설치목적
3. 설치규격 및 수량
4. 설치장소
5. 허가기간
6. 관리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7. 시공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8. 허가조건

구 청 장 인

(별지 제 12 호서식)

제 호

계 고 서

주 소 :  
성 명 :

귀하(또는 귀회사, 기타)가 아래 장소에 불법(또는 불량, 기타)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고서를 송달하오니 이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로 광고물을 제거(정비)하십시오.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 15 조에 의하여 당 구청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가. 광고물설치장소 :  
나. 위반 사항 :

198 . . .

구 청 장 인

귀 하

<p>&lt; 별지 제 13 호서식 &gt;</p> <p style="text-align: center;"><b>대 집 행 영 장</b></p>	
<p>제 호</p>	<p>주소 :                  성명 :                  귀하 ( 또는 귀회사, 기타 ) 가                  아래장소의 불법 ( 불량, 기타 ) 광                  고물을 부착한 것에 관하여                  19 년 월 일 제고신을 송                  달하였던 바, 지정기일내에 이행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 15.조                  에 의하여 당 구청에서 이를                  집행하겠습니다.</p>
<p>대 집 행 영 장</p>	<p>대집행할 시기</p> <hr/> <p>대집행 책임자직위 성명</p> <hr/> <p>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기산전적액</p>
<p>19 년 월 일</p>	
<p>구 청 장 성명 ㉠</p>	
<p>귀 하</p>	
<p>&lt; 별지 제 14 호서식 &gt;</p>	
<p>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b>비 용 등 부 명 영 서</b></p>	
<p>주 소 성 명</p>	
<p>19 년 월 일부 제 호 대집행영장으로써 시행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금액을 년 월 일까지 당 구청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p>	
<p>금 내 역 원정</p>	<p>일 원 원 원 원</p>
<p>1. 2. 3. 4.</p>	<p>19 년 월 일</p>
<p>구 청 장 성명 ㉠</p>	
<p>귀 하</p>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8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동부주택(주) 이용호, 정명섭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322

나. 대지면적 : 1,999.40㎡

다. 용도 : 일반분양 연립주택

라. 규모 : 연립 3층 2동 36세대

마. 건축면적 : 3,361.22㎡

4. 사업시행기간 : 1988. 7. -1988.12. 정부 설계도서(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904 호

도시계획사업(하천개수)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관보 제 10987 호(88.7.21)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고시제 614 호 도시계획사업(하천개수) 실시계획 인가증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988.11.

서울특별시장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 번	면적(㎡)		정정사항								비 고	
		대상면적	별입 면적	당				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성명	소유자	소재지	주소	성명		
관악구 신림동 23-1	지공지	1,031	1,031	강서구	어연선			관악구	어연선	강남구	명보영	가동계	
				시정동				봉천동		반포동			
				955-9				1691번		산 72-			
								19천 일가		1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상 황								비고	
		대상 면적	현입 면적	당				정					
				소유자		관계인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대문 구 용문 동 48- 84유건 515	김영오	근저당	
										성동구 평강동 산 21 원캐힐 23층 002호	이도진		
										중구 매곡로 1가 31	서울 특별 시장	압류	
관악구 신림동 22	담	2,661	2,661	영등포구 이득환 구영동 포 2동 30번지				영등포구 이득환 구영동 포 2동 가 220 번지					

☉서울특별시고시제 906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0(’88. 9. 20) 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819 호(’88. 10. 14) 로 지적 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53-231 ~ 553-20 간의 1개소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같은별 시행령 제 6조의 규정

개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인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 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53-231 ~ 553-20 간



<p>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2가 48-15 ~ 64-1 간</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li> <li>○ 명칭: 자양동 553-23. ~ 553-20 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li> </ul> <p>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원: 8미터, 연장 205미터</li> </ul> <p>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서울특별시장 (성동구청장)</li> <li>○ 주소: 서울시 중구 대경로 1가 31번길</li> </ul> <p>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년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수예정년월일: 1988년 11월 20일</li> <li>○ 준공예정년월일: 1989년 6월 30일</li> </ul>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p>
---	--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사용또는 사용면적	소 유 자		실적의상황
				주 소	성 명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4동	64- 9	도로	210 ㎡	성동구 성수 2가 64-2	한상만 외 7인	도 로

◎서울특별시고시제 911 호

사방지점지해제

1. 사방사업법 제 20 조 및 동법시  
행령 제 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점지권을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 조에 의거 해제고시 합니다.

가. 사방지점지해제조서: 아래(사  
초구신원동산 17 의 122 필)

1988. 11. 22.

서울특별시장

사방지점지해제명세서

소재지			지 목	지 적 (㎡)	지 정 해 제			비 고
구	동	지 번			면적(㎡)	일 자	면 적(㎡)	
서초	신원	산 17	임야	992	992	48.2.5	992	사방사업법 20 조 1항 동시행령 2조에 의한 지권 해제
"	"	산 24	"	30,942	30,942	68.4.23	30,942	"

소 재 지			지 록	지 적 (㎡)	지 정 배				비 고
구	동	지 번			면 적(㎡)	일 자	면 적(㎡)	사 유	
서초	신원	산 25	임야	5,851	5,851	68. 4.23	5,851	사방사업법 20조 1항 동 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산 28	"	40,579	40,579	"	40,579	"	
"	"	산 31	"	7,835	7,835	"	7,835	"	
"	"	산 48-2	"	793	793	"	793	"	
"	"	산 49	"	26,082	26,082	48. 2. 5	26,082	"	
"	"	산 50	"	10,116	10,116	"	10,116	"	
"	"	산 53	"	10,512	10,512	68. 4.23	10,512	"	
"	"	산 58	"	17,355	17,355	"	17,355	"	
"	"	산 60	"	5,256	5,256	"	5,256	"	
"	"	산 6	"	11,504	11,504	49. 9.30	11,504	"	
"	"	산 7	"	99	99	"	99	"	
"	"	산 8	"	595	595	"	595	"	
"	"	산 13	"	4,860	4,860	"	4,860	"	
"	"	산 21	"	12,298	12,298	"	12,298	"	
"	"	산 22	"	41,950	41,950	68. 4.23	41,950	"	
"	"	산 26	"	18,645	18,645	"	18,645	"	
"	"	산 27	"	31,736	31,736	"	31,736	"	
"	"	산 29	"	13,091	13,091	"	13,091	"	
"	"	산 30	"	10,413	10,413	"	10,413	"	
"	"	산 32	"	1,289	1,289	"	1,289	"	
"	"	산 33	"	13,587	13,587	"	13,587	"	
"	"	산 34	"	6,050	6,050	"	6,050	"	
"	"	산 35	"	24,793	24,793	"	24,793	"	
"	"	산 36	"	17,157	17,157	"	17,157	"	
"	"	산 37	"	18,744	18,744	"	18,744	"	
"	"	산 39-1	"	724,536	724,536	"	724,536	"	
"	"	산 39-18	"	22,116	22,116	"	22,116	"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적		해		비고
구	동	지번			면적(㎡)	일자	면적(㎡)	사유	
서초	신원	산 40	임야	11,901	11,901	68. 4.23	11,901	사방사업법 20조 1항 동시행형 2조에 의한 권원 해제	
"	"	산 41	"	11,286	11,286	"	11,286		
"	"	산 42	"	2,479	2,479	"	2,479		
"	"	산 43	"	8,429	8,429	"	8,429		
"	"	산 44	"	1,686	1,686	"	1,686		
"	"	산 45	"	5,421	5,421	"	5,421		
"	"	산 47	"	2,380	2,380	"	2,380		
"	"	산 48-1	"	25,785	25,785	"	25,785		
"	"	산 50-1	"	66	66	"	66		
"	"	산 52	"	17,058	17,058	"	17,058		
"	"	산 54	"	73,587	73,587	"	73,587		
"	"	산 55-2	"	44,628	44,628	"	44,628		
"	"	산 55-3	"	22,116	22,116	"	22,116		
"	내곡	산 13-1	"	2,509,001	2,509,001	58. 1.11	2,509,001		
"	"	산 13-196	"	366,929	366,929	68. 4.23	366,929		
"	원지	산 4-1	"	10,909	10,909	"	10,909		
"	"	산 4-2	"	3,471	3,471	"	3,471		
"	"	산 4-3	"	52,562	52,562	"	52,562		
"	"	산 4-5	"	56,033	56,033	"	56,033		
"	"	산 4-6	"	222,149	222,149	"	222,149		
"	"	산 4-15	"	126,942	126,942	"	126,942		
"	"	산 4-16	"	21,322	21,322	68. 4.28	21,322		
"	"	산 4-18	"	44,430	44,430	"	44,430		
"	"	산 4-19	"	2,479	2,479	"	2,479		
"	"	산 4-24	"	19,835	19,835	"	19,835		
"	"	산 10	"	52,560	52,560	"	52,560		
"	"	산 11	"	12,298	12,298	"	12,298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해제		비고
구	동	지번			면적(㎡)	일자	면적(㎡)	사유	
서초	원지	산 12	임야	8,529	8,529	68. 4.28	8,529	사방사업법 20조 1항 동시행형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산 13	"	19,338	19,338	"	19,338	"	
"	"	산 15	"	11,901	11,901	"	11,901	"	
"	"	산 21	"	74,376	74,376	"	74,376	"	
"	"	산 23	"	80,231	80,231	"	80,231	"	
"	"	산 28	"	36,893	36,893	"	36,893	"	
"	"	산 34	"	5,355	5,355	68. 4.23	5,355	"	
"	"	산 35	"	3,570	3,570	"	3,570	"	
"	"	산 36	"	7,637	7,637	"	7,637	"	
"	"	산 40	"	2,272	2,272	"	2,272	"	
"	"	산 41	"	12,495	12,495	"	12,495	"	
"	"	산 42	"	114,744	114,744	"	114,744	"	
"	"	산 43	"	7,339	7,339	"	7,339	"	
"	"	산 44	"	34,215	34,215	"	34,215	"	
"	"	산 45	"	22,810	22,810	"	22,810	"	
"	"	산 46	"	2,975	2,975	"	2,975	"	
"	"	산 47	"	62,480	62,480	"	62,480	"	
"	"	산 50	"	2,579	2,579	"	2,579	"	
"	"	산 51-1	"	10,810	10,810	"	10,810	"	
"	"	산 52	"	32,825	32,825	"	32,825	"	
"	"	산 54	"	7,537	7,537	"	7,537	"	
"	"	산 56-1	"	32,628	32,628	"	32,628	"	
"	"	산 64	"	25,289	25,289	"	25,289	"	
"	"	산 65	"	4,661	4,661	"	4,661	"	
"	"	산 67	"	13,388	13,388	"	13,388	"	
"	"	산 68	"	19,041	19,041	"	19,041	"	
"	"	산 71-1	"	24,198	24,198	"	24,198	"	

소 계 지			지 목	지 적 (㎡)	지 정 해			비 고
구	동	지 번			면 적(㎡)	일 차	면 적(㎡)	
서초	원지	산 71-2	임야	1,388	1,388	66. 4.23	1,388	사방사업법 20 조 1항 등 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해제
"	"	산 71-3	"	694	694	"	694	"
"	"	산 72	"	79,041	79,041	"	79,041	"
"	"	산 73-1	"	3,107	3,107	"	3,107	"
"	"	산 73-3	"	4,767	4,767	"	4,767	"
"	"	산 73-4	"	3,339	3,339	"	3,339	"
"	"	산 73-6	"	655	655	"	655	"
"	"	산 76	"	14,479	14,479	"	14,479	"
"	"	산 77	"	19,834	19,834	"	19,834	"
"	"	산 78-1	"	20,678	20,678	"	20,678	"
"	"	산 78-2	"	36,585	36,585	"	36,585	"
"	"	산 78-3	"	1,005	1,005	"	1,005	"
"	"	산 78-4	"	4,013	4,013	"	4,013	"
"	"	산 79-2	"	26,281	26,281	"	26,281	"
"	"	산 82-2	"	11,306	11,306	"	11,306	"
"	"	산 82-3	"	21,488	21,488	"	21,488	"
"	"	산 82-4	"	1,289	1,289	"	1,289	"
"	"	산 82-5	"	7,686	7,686	"	7,686	"
"	"	산 82-6	"	8,132	8,132	"	8,132	"
"	"	산 82-7	"	4,661	4,661	"	4,661	"
"	"	산 82-8	"	926	926	"	926	"
"	"	산 82-9	"	2,430	2,430	"	2,430	"
"	"	산 83-1	"	142,017	142,017	"	142,017	"
"	"	산 83-2	"	17,851	17,851	"	17,851	"
"	"	산 84	"	26,281	26,281	"	26,281	"
"	"	산 85	"	23,207	23,207	"	23,207	"
"	"	산 86	"	39,868	39,868	"	39,868	"

소재지			지목	지적 (㎡)	지		임		해	계	비	고
구	동	지번			면적(㎡)	일자	면적(㎡)	사				
서초	원지	산 87	임야	65,554	65,554	68.4.23	65,554	사방사업법 20 조 1항 동시행령 2조에 의한 직권 행세				
"	"	산 88-1	"	51,924	51,924	"	51,924	"				
"	"	산 92-1	"	6,612	6,612	"	6,612	"				
"	"	산 94	"	28,263	28,263	"	28,263	"				
"	"	산 95	"	12,193	12,193	"	12,193	"				
"	"	산 96	"	4,562	4,562	"	4,562	"				
"	"	산 97	"	5,157	5,157	"	5,157	"				
"	"	산 106	"	61,686	61,686	"	61,686	"				
"	"	산 107	"	86,280	86,280	"	86,280	"				
"	"	산 108	"	37,785	37,785	"	37,785	"				
"	"	산 112	"	33,124	33,124	"	33,124	"				
"	"	산 114	"	106,909	106,909	"	106,909	"				
"	우면	산 34-1	"	264,586	264,586	"	264,586	"				

○서울특별시고시제 317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제 20조 동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였기 이를 고  
시합니다.

1986.11.24

서울특별시장

사방지 지정의 해제명세서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년 (㎡)	해제년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지번					주	소
서울	동작	동작 산 25-1	임	6,863	6,863	6,863	성동구 옥수동 2-9	이 기 설
"	"	산 27	"	16,860	16,860	16,860	서대문구 합동 32	박 성 일
"	"	산 28-1	"	22,405	22,405	22,405	용산구 잠실동 6-5	김 덕 기
"	"	산 28-1	"	1,097	1,097	1,097	"	"

소 재 지				지 목	지 정 해 제			소 유 자 또는 경 유 자	
시	구	동	지 번		지 적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동작	산 28-5	임	727	727	727	동작구 동작동 산 28-3	김영호 의 15인
"	"	"	산 28-6	"	79	79	79	용산구 갈철동 6-5	김민기
"	"	"	산 28-8	"	8	8	8	"	"
"	"	"	산 28-9	"	1,307	1,507	1,507	"	"
"	"	"	산 28-10	"	6,452	6,462	6,462	"	"
"	"	"	산 28-11	"	402	402	402	서울시지 하철공사	"
"	"	"	산 28-12	"	203	203	203	"	"
"	"	"	산 29-2	"	5,093	5,093	5,093	서울시	"
"	"	"	산 29-3	"	16,704	16,704	16,704	서대문구 합정동 323	박성일
"	"	"	산 29-4	"	1,435	1,435	1,435	"	"
"	"	"	산 29-5	"	1,742	1,742	1,742	"	"
"	"	"	산 30-1	"	631	631	631	국 (국 방 부)	"
"	"	"	산 30-3	"	694	694	694	" ( " )	"
"	"	"	산 30-4	"	67	67	67	" ( " )	"
"	"	"	산 30-5	"	1,228	1,228	1,228	" ( " )	"
"	"	"	산 30-6	"	187	187	187	" ( " )	"
"	"	"	산 30-7	"	7	7	7	" ( " )	"
"	"	"	산 30-8	"	921	921	921	" ( " )	"
"	"	"	산 30-9	"	33,256	33,256	33,256	" ( " )	"
"	"	"	산 31-6	"	12,198	12,198	12,198	" ( " )	"
"	"	"	산 31-7	"	2,598	2,598	2,598	" ( " )	"
"	"	"	산 31-8	"	42,793	42,793	42,793	" ( " )	"
"	"	"	산 33-3	"	14,281	14,281	14,281	" ( " )	"

소 개 지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해 면 적	소 유 자 또는 점 유 자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동라	산 33-4	임	29,752	29,752	29,752	국 (국방부)	
"	"	"	산 33-5	"	29,752	29,752	29,752	" ( " )	
"	"	"	산 33-6	"	29,752	29,752	29,752	" ( " )	
"	"	"	산 33-7	"	29,158	29,158	29,158	" ( " )	
"	"	"	산 33-8	"	29,752	29,752	29,752	" ( " )	
"	"	"	산 37-1	"	35,749	35,749	35,749	" ( " )	
"	"	"	산 37-2	"	595	595	595	" ( " )	
"	"	"	산 37-3	"	251	251	251	" ( " )	
"	"	"	산 37-4	"	1,091	1,091	1,091	" ( " )	
"	"	"	산 38-1	"	18,942	18,942	18,942	서래문로 2 가 108	임 상 순
"	"	"	산 38-4	"	1,587	1,587	1,587	국 (국방부)	
"	"	"	산 38-2	"	32,033	32,033	32,033	" ( " )	
"	"	"	산 3	"	4,463	4,463	4,463	" ( " )	
"	"	"	산 4-2	"	14,825	14,825	14,825	학교법인 경문	
"	"	"	산 11-1	"	10,446	10,446	10,446	명치정 2 정목 97	대 응 수
"	"	"	산 11-2	"	397	397	397	사당동 46	강 용 수
"	"	"	산 11-4	"	165	165	165	"	"
"	"	"	산 11-5	"	694	694	694	명치정 2 정목 97	대 응 수
"	"	"	산 11-6	"	396	396	396	사당동 46	강 용 수
"	"	"	산 11-7	"	198	198	198	"	"
"	"	"	산 12	"	3,849	3,849	3,849	사당동 52	강 창 수
"	"	"	산 12-1	"	515	515	515	"	"
"	"	"	산 13-1	"	4,364	4,364	4,364	"	"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해제		소유자또는접유자	
시	구	동	지번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동작	산 14	임	1,984	1,984	1,984	사당동 100	박 미 성
"	"	"	산 16-1	"	7,914	7,914	7,914	" 58-84	고 대 일
"	"	"	산 16-2	"	179	179	179	사당동산 14	이 원 조
"	"	"	산 16-3	"	331	331	331	장남구서초동산 187-11	박 명 식
"	"	"	산 16-4	"	165	165	165	태고릉	김 해 원
"	"	"	산 16-5	"	162	162	162		"
"	"	"	산 16-6	"	261	261	261		홍 원 표
"	"	"	산 16-7	"	221	221	221		임 형 숙
"	"	"	산 16-11	"	2,030	2,030	2,030		고 대 일
"	"	"	산 18-1	"	35,715	35,715	35,715	도봉구수유동 404-8	민 과 일
"	"	"	산 18-2	"	46	46	46	중구대경로 2 가 250	김 영 남
"	"	"	산 18-3	"	225	225	225		"
"	"	"	산 18-4	"	807	807	307		서 륜
"	"	"	산 20	"	14,083	14,083	14,083	성북구동선동 4 가 242	김 중 수
"	"	"	산 21	"	12,893	12,893	12,893	용산구청 파동 2 가 72-2	김 흥 범
"	"	"	산 22-6	"	11,055	11,055	11,055		국
"	"	"	산 22-7	"	9,061	9,061	9,061		"
"	"	"	산 22-9	"	22,605	22,605	22,605		"
"	"	"	산 22-11	"	98,585	98,585	98,585		"
"	"	"	산 22-5	"	13,399	13,399	13,399		"
"	"	"	산 23-2	"	12,397	12,397	12,397		"
"	"	"	산 24	"	4,265	4,265	4,265		"
"	"	혹석	산 26	"	5,653	5,653	5,653		학 교 병 인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지 정 해 제		소 유 자 또 는 점 유 자	
시	구	동	지 번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흑석	산 83-4	임	694	694	694		국 유 지
"	"	"	산 83-25	"	469	469	469		서울특별시
"	"	"	산 83-26	"	1,226	1,226	1,226		국 유 지
"	"	"	산 83-27	"	1,983	1,983	1,983	산 5-36	목 하 정
"	"	"	산 83-37	"	6,843	6,843	6,843	흑석동산 42-3	방 일 정
"	"	"	산 83-41	"	264	264	264		서울특별시
"	"	"	산 83-43	"	196	198	198	흑석동 37-28	이 용 환
"	"	"	산 83-44	"	189	189	189		천 터 종
"	"	"	산 83-50	"	126	126	126		"
"	"	"	산 88-3	"	298	298	298	흑석동 86	미기승삼장
"	"	"	산 88-13	"	1,815	1,815	1,815		"
"	"	"	산 88-14	"	24,212	24,212	24,212	흑석동 88-5	박 완 용
"	"	"	산 88-15	"	423	423	423	" 86	미기승삼장
"	"	"	산 88-18	"	298	298	298		서울특별시
"	"	"	산 88-25	"	166	166	166	흑석동 33-42	서 경 일
"	"	"	산 88-26	"	20	20	20		국 유 지
"	"	"	산 88-27	"	83	83	83		서울특별시
"	"	"	산 88-29	"	124	124	124	산 88-29	차 경 수
"	"	"	산 88-33	"	33	33	33		국 유 지
"	"	"	산 88-35	"	198	198	198		"
"	"	"	산 88-36	"	960	960	960		"
"	"	"	산 88-37	"	1,190	1,190	1,190		서울특별시
"	"	"	산 88-38	"	529	529	529		"
"	"	"	산 88-39	"	1,630	1,630	1,630		국 유 지
"	"	"	산 88-40	"	89	89	89		서울특별시
"	"	"	산 88-41	"	162	162	162		국 (재무부)
"	"	"	산 88-42	"	119	119	119		"

72-44 배 1426 호

사

보 1988.12.5

소 개 지				지 목 지 지	지 정 해 계			소 유 자 또는 점 유 자	
시	구	동	지 번		면 적	전 적	추 소	성 명	
서울	동작	후석	산 88-43	입	139	139	139	국(재무부)	
"	"	"	산 88-48	"	89	89	89	서울특별시	
"	"	"	산 88-52	"	397	397	397	"	
"	"	"	산 88-54	"	129	129	129	산 88 박 출 권	
"	"	"	산 88-55	"	33	33	33	국 유 지	
"	"	"	산 88-57	"	139	139	139	도봉구공농동육사 117호	
"	"	"	산 88-58	"	112	112	112	육식동산 88-5	
"	"	"	산 88-59	"	612	612	612	국 유 지	
"	"	"	산 88-61	"	116	116	116	서울특별시	
"	"	"	산 88-62	"	124	124	124	종로구청문동산 4-25	
"	"	"	산 89	"	2,976	2,976	2,976	국 유 지	
"	"	노량진	산 8-15	"	231	231	231	산 8 장업 순의 2	
"	"	"	산 8-16	"	66	66	66	국 유 지	
"	"	"	산 9-10	"	10	10	10	"	
"	"	"	산 11-16	"	198	198	198	"	
"	"	"	산 11-27	"	198	198	198	"	
"	"	"	산 11-28	"	7	7	7	"	
"	"	"	산 11-32	"	694	694	694	"	
"	"	"	산 11-36	"	40	40	40	"	
"	"	"	산 11-40	"	99	99	99	"	
"	"	"	산 11-42	"	1,233	1,233	1,233	"	
"	"	"	산 11-46	"	3	3	3	"	
"	"	"	산 11-47	"	298	298	298	"	
"	"	"	산 11-48	"	56	56	56	"	
"	"	"	산 11-49	"	60	60	60	"	
"	"	"	산 11-58	"	99	99	99	"	

소 계 지			지목	지적	지정	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면적	면적
서울	동작	상 도	산 43-4	임야	106	106	106	강동구서초동 1059	고 용 은
"	"	"	산 43-7	"	23	23	23	영등포구신길동 329-70	김 방 회
"	"	"	산 43-8	"	73	73	73	노량진 74	전주이씨 용신공파
"	"	"	산 43-9	"	17	17	17	강남구서초동 1559	고 용 은
"	"	"	산 43-12	"	1,590	1,590	1,590	상도동 221	학교법인중앙
"	"	"	산 47-14	"	469	469	469	용산구이촌동 301-160	김 영 철
"	"	"	산 47-12	"	13	13	13	산 5-36	목 하 영
"	"	"	산 47-15	"	99	99	99	용산구이촌동 89	세일산업주
"	"	"	산 47-16	"	36	36	36	" 24-22	김 목 현
"	"	"	산 42-17	"	13,729	13,729	13,729		국 유 지
"	"	"	산 47-24	"	4,288	4,288	4,288		"
"	"	"	산 47-25	"	5,560	5,560	5,560		"
"	"	"	산 47-31	"	1,438	1,438	1,438		"
"	"	"	산 47-41	"	129	129	129		"
"	"	"	산 47-44	"	245	245	245		"
"	"	"	산 47-48	"	119	119	119		"
"	"	"	산 47-49	"	126	126	126		"
"	"	"	산 47-53	"	195	195	195		"
"	"	"	산 47-54	"	195	195	195		"
"	"	"	산 47-55	"	261	261	261		"
"	"	"	산 47-56	"	126	126	126		"
"	"	"	산 47-58	"	149	149	149	영등포구영등포동 631	김 해 성
"	"	"	산 47-59	"	152	152	152	봉천동 372-5	김 장 현
"	"	"	산 49-60	"	17	17	17		국 유 지
"	"	"	산 47-61	"	1,302	1,302	1,302		국 유 지
"	"	"	산 49-1	"	6,529	6,529	6,529	육서동산 5-36	목 하 영
"	"	"	산 49-3	"	397	397	397		송 윤 실
"	"	"	산 49-6	"	99	99	99		고 병 암
"	"	"	산 49-8	"	185	185	185	안양읍원천리 59	이 철 순

소 재 지				지 부	지 적	지 정 면 적	책 제 면 적	소 유 자 또는 점 유 자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상 도	산49-16	임야	397	397	397		서울시
"	"	"	산49-17	"	397	397	397	상도동1-1	학교법인연합
"	"	"	산49-18	"	20	20	20		서울특별시
"	"	"	산49-26	"	3,408	3,408	3,408	산6	송문자
"	"	"	산49-31	"	99	99	99	흑석동산 5-36	목하영
"	"	"	산49-32	"	99	99	99	"	"
"	"	"	산49-33	"	50	50	50	"	"
"	"	"	산49-34	"	198	198	198		서울특별시
"	"	"	산49-36	"	8,926	8,926	8,926	서대문구천연동80-23	이종승
"	"	"	산49-41	"	893	893	893	"	"
"	"	"	산49-47	"	155	155	155	상도 1동 782-2	재단법인 성근자
"	"	"	산49-60	"	142	142	142	"	"
"	"	"	산49-62	"	122	122	122	"	"
"	"	"	산49-63	"	390	390	390	"	"
"	"	"	산49-65	"	169	169	169	용산구알월동 5-13	합자회사경성교
"	"	"	산49-68	"	119	119	119	상도 1동 782-2	재단법인 성근자
"	"	"	산49-69	"	56	56	56	"	"
"	"	"	산49-74	"	99	99	99	서대문구천연동80-23	이종승
"	"	"	산49-78	"	11,643	11,643	11,643	흑석동산 5-36	목하영
"	"	"	산49-79	"	33	33	33	"	"
"	"	"	산49-80	"	30	30	30	"	"
"	"	"	산49-81	"	145	145	145	"	"
"	"	"	산49-85	"	26	26	26	흑석동 79-41	임진희
"	"	"	산49-86	"	939	939	939	흑석동산 5-35	목하영
"	"	"	산49-87	"	179	179	179	도봉구방학동 632-44	한병두
"	"	"	산49-88	"	83	83	83	흑석동 198-83	이희돌

소재지				기목	지적	면적	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서울	동작	상도	산49-89	입야	66	66	66	혹석동 198-83	이희철
"	"	"	산49-90	"	106	106	106	상도 1동 620	김상봉
"	"	"	산49-91	"	89	89	89	"	"
"	"	"	산49-92	"	179	179	179	"	"
"	"	"	산49-93	"	20	20	20	"	"
"	"	"	산49-94	"	109	109	109	영등포구신도림동 1043-30	이우정
"	"	"	산49-95	"	83	83	83	"	"
"	"	"	산49-96	"	7	7	7	상도 1동 620	김상봉
"	"	"	산49-97	"	122	122	122	"	"
"	"	"	산49-98	"	56	56	56	은행동중앙동 280-9	김희주
"	"	"	산49-99	"	155	155	155	관악구신림동 127-59	유신필
"	"	"	산49-100	"	208	208	208	상도 1동 620	김상봉
"	"	"	산49-101	"	469	469	469	"	"
"	"	"	산49-102	"	152	152	152	혹석동 198-83	이희철
"	"	"	산49-103	"	152	152	152	영등포구신림동 329-59	이희영
"	"	"	산49-120	"	1,795	1,795	1,795	혹석동산 5-36	목하영
"	"	"	산57-121	"	8,975	8,975	8,975	"	서울특별시
"	"	"	산57-9	"	99	99	99	동대문구계기 1동	윤양선
"	"	"	산57-14	"	132	132	132	중구올지로 3가 296-2	대한주택공사
"	"	"	산57-15	"	8,774	8,774	8,774	상도 1동 116-18	최호용
"	"	"	산57-17	"	694	694	694	중구소공동 45	대한주택공사
"	"	"	산57-18	"	26	26	26	"	"
"	"	"	산57-11	"	549	549	549	중구구례화동 74-36	장완식

소 재 기				지목	지점	지 면	정 적	해 면	계 적	소 유 자 또는 점 유 자	
시	구	동	기 번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상 도	산 57-22	임야	49	49	49	종로구혜화동 126-106	김 병 인		
"	"	"	산 57-23	"	208	208	208	130-24	유 형 석		
"	"	"	산 57-31	"	93	93	93	종로구혜화동 74-36	장 완 식		
"	"	"	산 57-32	"	347	347	347	중구남산동 3 가 18-9	윤 정 화		
"	"	"	산 57-34	"	26	26	26	126-2	장 완 식		
"	"	"	산 57-35	"	6,060	6,060	6,060	부천시송내동 589 상의아파트 2	김 흥 박		
"	"	"	산 57-36	"	7,418	7,418	7,418	관악구신림동 77-15	삼진토지 개발(주)		
"	"	"	산 57-37	"	506	506	506	용산구청과동 1 가 33-1	곽 기 순		
"	"	"	산 57-38	"	46	46	46		이 영 휘		
"	"	"	산 57-39	"	30	30	30		합자회사		
"	"	"	산 57-42	"	539	539	539	중구소공동 45	경 성 고	대한주택공사	
"	"	"	산 57-43	"	6,787	6,787	6,787	마포구창천동 100-43	김 채 열		
"	"	"	산 57-44	"	12,988	12,988	12,988	종로구옥인동 47-2	배 정 수		
"	"	"	산 57-46	"	198	198	198	상도 1 동 126-75	박 관 권		
"	"	"	산 57-47	"	73	73	73	성북구삼선동 5 가 63-8	김 채 열		
"	"	"	산 57-50	"	159	159	159	상도 1 동 126-109	맹 정 임		
"	"	"	산 57-52	"	129	129	129	126-28	홍 성 진		
"	"	"	산 57-53	"	99	99	99	중구소공동 45	조신주택영단		
"	"	"	산 57-55	"	43	43	43	성북구삼선동 5 가 63-8	김 채 열		



스 패 지				지목	지적	기정 면적	해역 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시	구	동	번지					주	성명
서울	동각	상도	산 57-56	일야	63	63	63	성북구삼선동 5가 63-8	김재철
"	"	"	산 57-57	"	79	79	79	"	"
"	"	"	산 57-58	"	13	13	13	"	"
"	"	"	산 57-59	"	215	215	215	장로구연지동 136-46	대한여수
"	"	"	산 57-60	"	126	126	126	산 57-60	이순희
"	"	"	산 57-61	"	10	10	10	성북구삼선동 5가 63-8	김재철
"	"	"	산 57-62	"	119	119	119	"	"
"	"	"	산 57-63	"	109	109	109	관악구봉천동 191	최익백
"	"	"	산 57-64	"	119	119	119	서대문구충정동 42	이부근
"	"	"	산 57-65	"	93	93	93	성북구삼선동 63-8	김재철
"	"	"	산 57-66	"	60	60	60	"	"
"	"	"	산 57-67	"	102	102	102	관악구봉천동산 101-124	장점래
"	"	"	산 57-68	"	60	60	60	성북구삼선동 5가 63-8	김재철
"	"	"	산 57-69	"	278	278	278	성북구삼선동 5가 63-8	"
"	"	"	산 57-70	"	20	20	20	"	"
"	"	"	산 57-71	"	165	165	165	산 57-70	이부근
"	"	"	산 57-73	"	516	516	516	마포구창천동 100-43	김재철
"	"	"	산 57-74	"	208	208	208	상도동 126-120	전충욱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면적	면적
서울	동대문	상도	산 57-75	임야	195	195	195	상도동 126-120	권 중 욱
"	"	"	산 57-77	"	2,017	2,017	2,017	상도 1 동 126-70	류 형 식
"	"	"	산 57-78	"	384	384	384	성북구 하월곡동 37-27	정 문 용
"	"	"	산 57-79	"	407	407	407	"	"
"	"	"	산 57-80	"	340	340	340	"	"
"	"	"	산 57-81	"	1,607	1,607	1,607	창천동 100-43	김 채 열
"	"	"	산 58	"	198	198	198	상도 1 동 113-13	김 영 신
"	"	"	산 64-23	"	66,116	66,116	66,116	중구 신당동 340-29	백 점 순
"	"	"	산 65-3	"	298	298	298	"	이 재 기
"	"	"	산 65-4	"	66	66	66	"	"
"	"	"	산 65-11	"	95,729	95,729	95,729	중구 남대문로 5가 20-1	이 열 배
"	"	"	산 65-12	"	10,519	10,519	10,519	"	정 단 범 인 과 덕 사
"	"	"	산 65-19	"	9,826	9,826	9,826	산 65-49	이 용 구
"	"	"	산 65-52	"	2,479	2,479	2,479	221	정 단 범 인 과 덕 사
"	"	"	산 65-53	"	694	694	694	"	"
"	"	"	산 65-59	"	142	142	142	"	서울특별시
"	"	"	산 65-60	"	158	158	158	159-78	김 광 수
"	"	"	산 65-70	"	89	89	89	중남부주군예흥면유영리 530	김 점 현
"	"	"	산 65-73	"	3,389	3,389	3,389	성북구 석북동 168-55	백 낙 민
"	"	"	산 65-74	"	30,879	30,879	30,879	221	정 단 범 인 과 덕 사
"	"	"	산 64-75	"	4,790	4,790	4,790	남대문로 5	정 주 의 안 평 역
"	"	"	산 65-76	"	331	331	331	134-51	정 단 범 인 과 덕 사
"	"	"	산 65-77	"	331	331	331	"	"

소 계 지				지목	지적	계정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면적	면적
서울	동작	상도	산65-100	임야	1,203	1,203	1,203	영등포구여의도동1-574	대광전총회
"	"	"	산65-104	"	4,087	4,087	4,087	중로구사직동262-25	취진우
"	"	"	산65-105	"	1,029	1,029	1,029	"	"
"	"	"	산65-110	"	2,789	2,789	2,789	중구남대문로5가20-1	전주이석영
"	"	"	산65-113	"	5,127	5,127	5,127	산65-49	이용구
"	"	"	산65-115	"	7,141	7,141	7,141	마포구신수동69-58	이영배
"	"	"	산65-116	"	4,760	4,760	4,760	"	"
"	"	"	산65-117	"	3,327	3,327	3,327	성북구성북동168-55	백낙민
"	"	"	산65-118	"	50	50	50	"	서울특별시
"	"	"	산65-127	"	1,018	1,018	1,018	134-51	재단법인삼일상
"	"	"	산65-131	"	701	701	701	영등포구여의도동1-574	대광전총회
"	"	"	산65-138	"	476	476	476	마포구신수동69-58	이범백
"	"	"	산65-139	"	119	119	119	201-136	양원석
"	"	"	산65-141	"	694	694	694	마포구신수동69-58	이영배
"	"	"	산65-142	"	661	661	661	중구남대문로2가20-1	전주이석영
"	"	"	산65-143	"	430	430	430	159-78	신창식
"	"	"	산65-144	"	272	272	272	"	서경보
"	"	"	산65-145	"	1,369	1,369	1,369	중구남대문로5가20-1	재단법인삼일상
"	"	"	산65-146	"	1,369	1,369	1,369	성북구성북동168-55	백낙민
"	"	"	산65-147	"	801	801	801	성북구동천동2가13C-16	최지하
"	"	"	산65-149	"	5,243	5,243	5,243	성북구성북동168-55	백낙민
"	"	"	산65-150	"	9,946	9,946	9,946	"	"
"	"	"	산65-151	"	201	201	201	"	"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의제 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서울	동작	상도	산65-154	임야	153	153	153	중구남대문로5가20-1	정주이 영령 석배
"	"	"	산65-155	"	9,004	9,004	9,004	성북구성북동168-55	백나민
"	"	"	산65-156	"	480	480	480	영등포구여의도동1-374	대광진홍(위)
"	"	"	산65-157	"	335	335	335	강서구등촌동483-41	이영배
"	"	"	산65-158	"	25,020	25,020	25,020		서울시
"	"	"	산65-160	"	659	659	659	중로구사직동262-25	위진우
"	"	"	산67-13	"	10,672	10,672	10,672	용산구효창동13-26	김달용
"	"	"	산67-116	"	126	126	126		서울특별시
"	"	"	산67-117	"	4,449	4,449	4,449	구로구독산동957	김종훈
"	"	"	산75-1	"	24,423	24,423	24,423		서울특별시
"	"	"	산75-3	"	12,912	12,912	12,912		"
"	"	"	산75-4	"	163	163	163		"
"	"	"	산75-5	"	302	302	302		"
"	"	"	산75-6	"	838	838	838		"
"	"	"	산76-1	"	18,942	18,942	18,942	구로구독산동228	사자암
"	"	"	산77-1	"	4,436	4,436	4,436		서울특별시
"	"	"	산77-12	"	504	504	504		"
"	"	"	산77-13	"	1,411	1,411	1,411		"
"	"	"	산77-14	"	202	202	202		"
"	"	대방	산84	"	50,089	50,089	50,089		국
"	"	"	산32	"	15,627	15,627	15,627		"
"	"	"	산84-1	"	231	231	231		"
"	"	"	산84-6	"	14,579	14,579	14,579		"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해계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	대방	산28-2	임야	3,273	3,273	3,273		국
"	"	상도	산31	"	15,273	15,273	15,273		"
"	"	"	산17	"	27,855	27,855	27,855		"
"	"	"	산25	"	12,794	12,794	12,794		"
"	"	"	산95-1	"	29,753	29,753	29,753		"
"	"	"	산99	"	47,009	47,009	47,009		"
"	"	"	산102-1	"	7,100	7,100	7,100		"
"	"	"	산105	"	6,837	6,837	6,837		"
"	"	"	산106-1	"	11,901	11,901	11,901		"
"	"	신대방	산146-4	"	37	37	37	중구소공동 112-5	원종모박취
"	"	"	산146-5	"	1,708	1,708	1,708	"	"
"	"	"	산143	"	1,785	1,785	1,785	수원서신면사관리	홍종용
"	"	"	산144-2	"	3,511	3,511	3,511	영등포구영등포동5가125	이경모
"	"	"	산144-3	"	14,100	14,100	14,100	"	"
"	"	"	산144-4	"	129	129	129	"	"
"	"	"	산151-2	"	727	727	727	중구소공동 112-5	원종산업취
"	"	"	산187-1	"	1,765	1,765	1,765	영등포구대림동150-19	장로교회 (문화교회)
"	"	"	산169-3	"	7,732	7,732	7,732	중구소공동 112-5	원종모박취
"	"	"	산173-1	"	10,612	10,612	10,612	"	"
"	"	"	산175-4	"	101	101	101	중구소공동 599-30	이문기
"	"	"	산115-2	"	238	238	238		국
"	"	"	산115-11	"	40	40	40		김순권
			356	"	1,948,913	1,773,732	1,773,732		

◎서울특별시고시제 918 호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및행정처분  
기준등에관한지침

서울특별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한 지침(서  
울특별시 고시 제 791 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한다.

1988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김용배

제 4 조를 삭제하고 제 5 조를 제 4 조  
로, 제 6 조를 제 5 조로 한다.  
제 5 조(행정처분기준) 제 1 항 별표  
2 안전유지 및 위해예방 조치 항  
목중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  
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  
적합시 처분기준중 2회 위반시  
“경고”를 “사용정지(시설보완시  
까지)”, 3회 위반시 “사용정지  
(시설보완시까지)”를 삭제하고,  
동 항목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며

위 반 사 항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당장) 위해 발생  
우려시  
제 2 항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관련법규 처분(1회)

- 고법 제 20 조 사용정지
- 맥법 제 29 조 (시설보완시까지)
- 도법 제 26 조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  
에 종전의 지침에 의한 허가 및  
행정처분농은 이 지침에 의한 것  
으로 본다
- 제 3 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  
에 적출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사  
항은 본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  
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93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 호(77.1.4)로  
결정 및 동고시 제 869 호(86.12.1)로  
변경결정된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  
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및 시  
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1.2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점	소로	1	10	790	금동217	궁동 245	(연장)
변 경	"	1	10	790	"	"	L=340m구간 선형조정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82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시행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 호(87.3.25)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서대문구 신촌동 100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완료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1.1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0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연세대학교부속 연세의료원 외사설 및 임상실험실 증축

다. 사업시행면적: 807,019㎡  
라. 사업의 규모  
-동수: 2동 증축  
· 구관: 지상 1개층 증축 (연 2,091.55㎡)  
· 신관: 지상 1, 2층 일부 증축 및 2개층 증축 (연 3,193.84㎡)  
-연면적: 5,285.39㎡

마. 사업시행자: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  
바. 사업기간: 87.3.25-88.10.30

◎ 서울특별시공고제 825 호

특정설비제조업소허가취소처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설비 제조사업 허가를 취소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11.16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업종	상호	소재지	대표자	허가취소일자	취소사유및판결법규
4-2	특정설비 제조사업	주영신 설비공업	성동구성수2가 317-5	김민	88.11.16	(무단이전)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9조

◎ 서울특별시 공고제 834 호

가락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공사원료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763 호 (86.10.18) 로  
조합설립및 사업시행 인가된 가락 제  
2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 재개발법  
제 48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88.11.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가락 제 2 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  
동 산 60-3 번지의 29 필지
3. 시행자 주소, 성명  
○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94-10 호  
○ 명칭 : 가락 제 2 구역 주택개량 재  
개발 조합
4. 시행기간 : 1986.10.18 ~ 1989. 6.30
5. 사업시행 계획에 의한 공중별 공  
사시행 내역  
가. 토 지

- 시행면적 : 17,623.3 m<sup>2</sup>
- 대지면적 : 16,948.5 m<sup>2</sup>
- 공공용지 면적 : 674.8 m<sup>2</sup>

나. 건 물

- 건축면적 : 3,643.31 m<sup>2</sup>  
(건폐율 : 21.49%)
- 연면적 : 50,256.3 m<sup>2</sup>  
(용적율 : 265.7%)

- 층 수 : 지상 11-15층, 지하 1층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부리시설
- 6. 사업비 재원별 내역  
○ 아파트분양금 : 19,283,702,832 원  
○ 상가 분양금 : 435,049,650 원  
계 19,718,752,482 원

◎ 서울특별시 공고제 836 호

천호제 2 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공사원  
료공고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하  
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주택개량  
재개발 천호제 2 구역의 공사가 완료되  
었기 도시 재개발법 제 48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1988. 11.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의명칭 : 전호재 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p> <p>나. 시행자 : 전호재 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상 이태형</p> <p>다. 시행기간 : 1986.1.18 ~ 1989.12.31</p> <p>라. 사업시행면적 : 8,851 m<sup>2</sup></p> <p>마. 완료내용</p> <p>1) 건축시설 : 상가 및 아파트 12층 1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3,261,865 m<sup>2</sup></li> <li>○ 연면적 : 35,792.51 m<sup>2</sup></li> <li>○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2층</li> <li>○ 주용도 : 아파트 : 주거용 (198 가구) 상 가 : 판매시설 (16,785,167)</li> </ul> <p>2) 부대 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정,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독서실</li> </ul> <p>○ 도시계획 안</p>	<p>◎ 서울특별시공고제 837 호</p> <p>주민동의결정취득위원회도시계획안공고</p> <p>1. 도시계획법제 11조, 제 16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의 2 제 6, 7 항 규정에 의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서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기간 : 1988.11.23-1988.12.7 ( 14일간 )</p> <p>1988.11.26 서울특별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등급</th> <th>유형</th> <th>번호</th> <th>폭원</th> <th>연</th> <th>장</th> <th>기</th> <th>집</th> <th>종</th> <th>점</th> <th>공람장소</th> <th>비</th> <th>고</th> </tr> </thead> <tbody> <tr> <td>도시계획시설</td> <td>도로</td> <td>중로</td> <td>2</td> <td>38-1</td> <td>15 m</td> <td>지정</td> <td>900m</td> <td>가회동</td> <td>혜화동</td> <td>종로구청</td> <td>일부구간</td> <td>(도로)변경</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변경</td> <td>990m</td> <td>(중 1-33)</td> <td>(중 3-7)</td> <td>도시정비과</td> <td>위치변경</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	장	기	집	종	점	공람장소	비	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	38-1	15 m	지정	900m	가회동	혜화동	종로구청	일부구간	(도로)변경									변경	990m	(중 1-33)	(중 3-7)	도시정비과	위치변경			
구	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	장	기	집	종	점	공람장소	비	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	38-1	15 m	지정	900m	가회동	혜화동	종로구청	일부구간	(도로)변경																																										
						변경	990m	(중 1-33)	(중 3-7)	도시정비과	위치변경																																											
<p>나. 입안사유 : 문화재 ( 사적 제 122 호 창덕궁 ) 저축구간의 일부노선위치변경</p> <p>◎ 서울특별시공고제 839 호</p> <p>서울역-서대문재 1 구역 제 7 지구재개발 사업시행인가취득위원회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제 368 호 (73.9.6) 로 재개</p>	<p>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0 호 ( 88.11.8 ) 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역-서대문 재 1 구역 제 7 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2. 관계서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p>																																																					

<p>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것이며,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p> <p>1988.11.22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의명칭 : 서울역-서대문 제 1 구역 제 7 지구 재개발사업</p> <p>나. 지적구역 및 면적        ○ 지적구역 : 중구 봉래동 1 가 31 일대 ( 제 93 필지 )        ○ 사업면적 : 1,665.7 m<sup>2</sup></p> <p>다. 사업시행예정자 : 중구 대평로 2 가 150 동방생명보험(주) 대표 이수만</p> <p>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p> <p>마. 공람기간 : 88.11.22 ~ 88.12.22</p> <p>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p> <p>◎ 서울특별시공고제 340 호</p>	<p>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166 호 (75.10.10) 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마천동 122-13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p> <p>2. 토지 ( 건물 )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p> <p>가. 공람공고 : 송파구청토목과 ( 전화 410-3405-8 )</p> <p>나. 공람기간 : 1988.11</p> <p>1988.11 서울특별시 장</p> <p>- 공람개요 -</p> <p>1. 사업명 : 송파구 마천동 122-13 도로 개설공사</p> <p>2. 사업시행지 : 마천동 122 번지일대</p> <p>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 6 m , L = 50 m</p> <p>4.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 년</p> <p>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송파구청장 )</p>
--	---

6. 기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공고에 문의 제출 바람

토 지 조 서

순위	위 치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송파구마천동 122-41	대	22	송파구마천동 122-13	도 제 회	
2	송파구마천동 122-40	"	78	송파구마천동 129-2	김 병 준	
3	송파구마천동 124-41	도로	10	송파구거여동 183-5 송파구거여동 181번지 강남구철담동 257번지 중랑구연무동 105-19	박 령 순 김 주 섭 박 봉 규 안 병 무	
4	송파구마천동 122-14	도로		성동구구의동 32-18	최 병 용	면적약 30㎡

가·옥 및 지장물 조서

순위	위 치	품 명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1	마천동 122-41	진 물		㎡	마천동 122-13	약 6㎡
2	"	담 장	11	㎡	도 제 회	(참고)
3	"	부 면	1	주		
4	"	대 주 나무	1	"		
5	마천동 124-6	대문(담장)	1	식	관악구봉천동 50-51 김 진 경	
6	" 124-32	"	1	식	마천동 131-12 오경운	

**○서울특별시공고제 855 호**

역촌구역 ( 2 차 ) 주택개발재개발  
사업공사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7 호 (82.2.6) 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같은 고시 제 296 호 (88.4.22) 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역촌구역 ( 2 차 ) 이 사업시행인가 및 설계도서등에 적합하게 시공완료 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명 칭 : 역촌구역 ( 2 차 )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기간 : 82.2.6 ~ 88.11.24
- 위 치 : 은평구 역촌동산 22-2 외 39 필지
- 면 적 : 13,239.60 ㎡
  - 택지 : 10,843.30 ㎡
  - 도로 : 1,597.20 ㎡
  - 녹지 : 799.10 ㎡

○ 관제 도서 :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

1988.11.25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공고제 858 호**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88.11.28 ~ 88.12.12 ( 14 일간 )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 전화 450-1385 )

1988.11.28  
서울특별시청

구분	도시계획안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 차 장	성동구광장동산 29 외 6 필지	약 5,453 ㎡	
변 경	도 로	성동구 사근동 301-84 301-58	B = 6 미터 L = 50 미터	폐 지
신 설	"	성동구 응봉동 200-7 200-2	B = 15 미터 L = 40 미터	"

<p><b>◎서울특별시공고제 866 호</b></p> <p>전기공사업체 행정처분</p> <p>전기공사업체의 국제 체납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다</p>		<p>같이 행정조치 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p> <p>1988.11. 서울특별시 장</p>			
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사 유
249	대화전기상사	중구오장동 139-10	이항수	영업정지 60일 '88.11.30 ~ '89.1.28	국제과납

<p><b>◎서울특별시공고제 868 호</b></p> <p>서소문구역 제 4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3 호 (84.12.26) 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8 호 (88.8.25) 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 4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경빌딩 대표 김종균의 1인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p> <p>가. 변경내용</p>		<p>이 있어 동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2.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p> <p>1988.11.30 서울특별시 장</p>	
--	--	---	--

구 분	기	경	변	경
○ 건물용도	업무시설 (부속용도: 판매시설)		업 무 시 설	
○ 기타사항	변 경 없 음		(변경전 인가내용과 동일)	

나. 변경사유: 동지구 사업계획(건축 계획) 변경결정(서울시 고시 제 880호(88.11.12)에 따른 건물 용도 일부변경임.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라.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869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기간연기) 인가공고

1. 건설부 공고 제 6 호('71.8.24)

○ 사업계획 변경내역

2. 관제도시는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8.12. 1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인가면적 (㎡)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비고
			기정	변경	
영동	1,851,398	서울특별시장	'71. 8.24- '88.12.31	'71. 8.24- '89. 6.30	6개월연장
김포	4,706,334	서울특별시장	'68. 1.23- '88.12.31	'68. 1.23- '89.12.31	1년 연장

**◎서울특별시공고제 872 호**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원료공고

i. 건설부 고시 제 470 호('73.12.1)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4 호('84.4.20)로 사업시행인가된 청운 제 1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점사를 필하였기 같은법 제 4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원료를 공고합니다.

1988.11.30  
서울특별시장

— 공 고 요 지 —

가. 사업명칭 : 청운제 1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나. 사업구역 : 종로구 청운동 1번지등  
146 필지 15,840.9㎡

다. 시행자 : 청운제 1구역 재개발조합

라. 시행기간 : '84.4.20 ~ '88.11.11

마. 사업시행 내역

- 1) 기존건축물 철거 : 113 동
- 2) 주택건설 : 3층 연립주택 9동  
126세대
- 3) 부대복리시설 : 상가 449.83㎡  
노인정 272.79㎡
- 4) 사업비 : 76억원
- 5) 시공자 : 한국건설㈜

구 고 시

◎성동구고시제 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 588 호 (88.7.6) 호로  
고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  
진법 제 33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11.24

성 동 구 청 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과 동
2. 사업주체	강동구 삼내동 551 동부주택㈜ 이용호, 정명섭	과 동
3. 사업시행의치및규모		
가. 위치	성동구 성수동 1가 656-322	과 동
나. 대지면적	1,999.40	1,970.0
다. 용도	일반분양 연립주택	과 동
라. 규모	연립 3층 2동 36세대	과 동
마. 건축연면적	3,361.22	3,328.32
4. 사업시행기간	'88.7 ~ '98.12.31	과 동
첨부 : 설계도서 (생략)		

<p>◎ <b>관악구공고제 110 호</b></p> <p>관인계각사용승인</p> <p>관구 동 (봉천 10, 11, 신림 11동)                  민원사무전용 직인 및 계인용 다음                  과 같이 제작 1988년 12월 5일부터</p>		<p>사용하고 구 공인을 동일자로 제거할                  은 관인규정 제9조 및 관악구 관                  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p> <p>1988.11.28                  관 악 구 청 장</p>	
			
	봉천제 10 동장의인	봉천제 10 동계인	봉천제 11 동장의인
관 인 계 각			
신 림 동	봉천제 11 동계인	신림제 11 동장의인	신림제 11 동계인



**구 공 고**

**◎서대문구공고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제 84 호('88.2.8)로 시행허가된 서대문구 홍은동 346-3의 1 필지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8.11.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46-3, 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신진운수㈜ 건축사 신숙

- 다. 사업시행면적 : 1,705㎡
- 라. 건물연면적 : 384.6㎡
- 마.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 바.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44-1 신진운수㈜ 대표 : 이병준
- 국. 사업기간 : '88.2.8 ~ '88.10.30
- 아. 준공도면 : 별첨(생략)

**◎서초구청공고제 149 호**

주택자재생산업자 등록취소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 41 조 동법 시행령 제 35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6 조 규정의 등록기준에 미달(대지 : 차적농지(답))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41 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 규정에 의거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거 공고합니다.

1988.11.22

서 초 구 청 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품목	등록취소사유	청문실시기 간	등록취소일 자
19-10	용인건설	정 전진	서초구방배동 602	보통시멘트기와	대지 : 자연농지(답) (청문실시 음소불응)	88.11.1 -11.15	88.11.22
19-33	우량산업	김 산지	서초구방배동 2873	보통시멘트벽돌·블록	"	"	"

◎도봉구공고제 3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  
에 따른 서류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71.4.7) 및 건설부고시 제 581 호('71.9.30)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만에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 내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8.11.24

도 봉 구 청 장

나. 사업시행기: 도봉구쌍문동 416의

18-416 의 31 간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쌍문동 416 일대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도로 B = 15 m,  
L = 198 m

라. 시행자주소: 서울시종로구안국동 37

성명: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박원국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년월일:  
1988.12 ~ 1989.8.31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34 호

하 천 점 용 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8.11.18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88.1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3 번지선 (한강)	하천	189㎡	승선대 설치	'88.11.18 ~ '88.1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장동 89	주식회사 삼덕 수상레저 대표 이사 심병천



㉔ 1988년 11월 26일 5급공무원 전보 명제 48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식정	무자관리담당관 무자선사2계장 세정과 평가계장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㉕ 1988년 11월 28일 6급이하공무원 파견해제 명제 49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진년	교통기획과 파견해제	회계과	지방행정주사
㉖ 1988년 12월 1일 지방별정직 7급상당이하공무원 의원면직 명제 49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상철	원어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환경연구소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상수	"	"	"
이연수	"	"	지방별정직 8급상당
김장열	"	"	"
신도철	"	"	"
최병욱	"	"	"
김병주	"	전자제산소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해자	"	"	지방별정직 8급상당
이선희	"	"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상태	"	"	"
김여학	"	"	지방별정직 9급상당
이명주	"	"	"
권경희	"	"	지방별정직 8급상당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하공무원 특별김용 명제 49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이상진	보건환경연구원 공해상비관리요원 (6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선규
이상수	" (7호봉)	"	"
이연수	공해측정기사 (4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
김장열	" (4호봉)	"	"
신도철	" (2호봉)	"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범욱	보건환경연구원 공해측정기사 (4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신규
김미영	" 공해측정장비관리요원(1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
김두래	" (3호봉)	"	"
박진호	" (3호봉)	"	"
김성호	" (2호봉)	"	"
김해경	공해측정기사 (1호봉)	"	"
안경수	" (3호봉)	"	"
윤호균	" (1호봉)	"	"
서미연	" (1호봉)	"	"
이승천	" (2호봉)	"	"
김난국	" (1호봉)	"	"
전용성	" (3호봉)	"	"
임채국	" (1호봉)	"	"
김병주	전자제산소 전산처리사 (4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
이혜자	" (2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
이선희	기계처리사 (7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
이상태	전산기계기사 (7호봉)	"	"
김여학	천공원 (5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
이병주	천공원 (2호봉)	"	"
권경희	전산처리사 (6호봉)	"	"
정재욱	" (1호봉)	"	"
김은주	천공원 (5호봉)	지방별정직 9급상당	"
김현자	천공원 (1호봉)	"	"
한미경	천공원 (1호봉)	"	"
조형주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1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
전동찬	경찰국 천공원 (2호봉)	지방별정직 9급상당	"
지방별정직 8급상당 의원면직			별계 49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성희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가정복지과	지방별정직 8급상당
김미영	"	"	"



성명	발령사	함	원부서
김미영	가정복지과	가정상담원 (4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손순자	"	" (10호봉)	"
김억수	"	" (9호봉)	"
박금자	"	" (6호봉)	"
정현자	"	" (9호봉)	"
노옥란	"	" (9호봉)	"
김중실	"	" (2호봉)	"
이경자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11호봉)	"
김명자	"	" (11호봉)	"
박규희	"	" (4호봉)	"
안점자	"	" (9호봉)	"
인준경	"	" (7호봉)	"
유춘식	"	" (4호봉)	"
김미경	"	" (4호봉)	"
김영숙	"	" (2호봉)	"
권필환	"	" (2호봉)	"
남미숙	"	" (2호봉)	"
박은실	"	" (2호봉)	"
신현덕	"	" (4호봉)	"
오창욱	"	" (3호봉)	"
박정규	"	" (4호봉)	"
고광숙	부녀복지과	수석부녀상담원 (8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유영욱	"	운락여성지도원 (4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영숙	"	일반부녀상담원 (9호봉)	"
권태숙	"	" (11호봉)	"
김윤희	마포부녀복지관	" (1호봉)	"
이신숙	"	" (6호봉)	"
이순덕	구로부녀복지관	" (4호봉)	"
윤연옥	"	" (4호봉)	"
김영희	"	훈련교사 (14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서정화	"	" (13호봉)	"

◎ 1988년 12월 1일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명제 495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윤영신	업무과회전('88.12.1-'89.3.31)	서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최광순	"	중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정무성	"	양천구	"	
이무영	"	시초구	"	
유희정	"	강남구	지방행정주사보	
정경철	"	중합건설본부	지방행정서기	
김명조	"	중랑구	"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보 명제 496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정병섭	중합건설본부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원보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명제 497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정종진	중랑구	송파구	지방행정주사	
박천휘	시립운동장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6. 5급공무원 추서 명제 481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위	직급
권구소	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	강남구	세무1계장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장.				